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라포레실버 요양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3조 (계약기간)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4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계약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4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 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1부
   2]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5.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4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월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또는 10의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없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 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여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10.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11.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요양급여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 **시설급여 (1일)**

※ 비급여 부분인 식재료비 및 기타 비용은 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요 양 급 여	노인요양시설 (현행법)	2,527,200원	2,344,500원	2,214,000원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1일당 25,000원(30일평균) 2인실/1일당 10,000원(30일평균)		
	식재료비 (1식/일3회)	3,500원*3회=10,500원		
	간식비(회)	1,000원*2회=2,000원		
	이/미용료등	무료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개인 부담비용 구분 총계

구분	1, 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7.5%
	8%	

※ [근거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한달 기준) *한달 = 30일 기준

구분		금액(원)			내역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총계		2,527,200원	2,344,500원	2,214,000원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계	2,021,760	1,875,600	1,771,200	
	요양급여비용 (80%)	2,021,760	1,875,600	1,771,200	
개인부담비용	소계	835,500	800,040	774,720	
	요 양 급 여 비 용 (20%)	505,440	468,900	442,800	
	식사재료비	3,500원 * 3회 * 30일 = 315,000원			30일 기준
	간식비	1,000원 * 2회 * 30일 = 60,000원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750,000원 2인실 300,000원			30일 기준
	이미용비	무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수납
- 상급침실은 (a)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 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8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8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를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을 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6.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제9조 (비용수납)

1.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계좌시에는 '00은행 (예금주: 라포레실버 요양원)'으로 한다.
3. 급여청구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7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한다. (단, 토.일요일은 제외)

제10조 (급여제공 동의서)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서 부본발부)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의무를 다한다.
3. 신원 인수인 권리: 입소자는 케어 받을 권리가 있으며 케어게 대해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어르신 케어과정에서 상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장 계약의 해제

제1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운영 규정상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5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입소비용을 3개월 체납될 경우
2.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제4장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 (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 (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로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6)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7)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3. 보호자 (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7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4. 분실,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7. 입소자의 고충이 있을 경우 입소자의 고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에 고충처리함을 설치하여 매월 30일에 고충처리함에 있는 고충을 개선한 후 개선된 내용을 기록한다.

제18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14일 이내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입소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 인지기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확인된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입소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입소자의 욕구문제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제5장 입소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입소보증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 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입소보증금의 반환)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입소보증금. 이용료등 비용에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21조 입소보증금.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00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시설급여 일반 원칙)

1.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라포레실버 요양원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발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라포레실버 요양원에서는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제23조 (입소보호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본 요양원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 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3. 라포레실버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4.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5.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간식비

3] 이.미용비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24조 (입소 전 상담)

본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원하시는 어르신은 입소 상담을 통해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입소상담을 통해서 본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위한 자세한 안내와 시설을 견학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인의 과거력에 관한 상담과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있거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 센터 내에서 발생되는 어르신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5조 (입소 시 지참물)

본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물품을 지참할 권리를 가진다.

1. 입소시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 침구류 등은 각방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2. 입소 시 지참물 중 별도 보관을 원하는 물품은 따로 준비된 개인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3. 다만 , 가구 및 가전제품의 지참은 본 요영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따로 정한 물품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숙소배정)

본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숙소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2.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3. 연령을 고려한 배정
4. 기타 입소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27조 (외출,외박)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출,외박할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의 건강상태 및 보호자의 동행
2. 외출이 목적과 목적지 및 귀원 시간의 고지
3. 외박의 목적과 목적지, 연락처, 귀원일시의 고지
4. 외박 시 보호자 고지

제28조 (면회)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면회할 권리를 가진다.

1. 면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면회자는 타 어르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르신의 숙소에서 숙박할 수 없다.
3. 음식물 반입시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4. 보다 체계적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물의 반입은 금한다.
5. 본 요양원 원장은 입소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면회를 통제할 수 있다.

제29조 (금품의 보관과 활용)

모든 어르신은 금품의 보관과 활용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 및 각종 수당은 해당 노인의 명의로 예금 또는 보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금전의 보관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담당직원에게 대리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으로부터 입금, 출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0조 (식사,간식)

1. 모든 어르신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식사시간은 조식 7:00-8:00, 중식 12:00-13:00, 석식 17:00-18:00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정상 식사시간을 지키시지 못한 경우라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생활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생활실에서 식

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의료.재활팀과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모든 어르신은 다음의 간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간식을 매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간식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차량이용)

모든 어르신은 필요에 따라 차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2조 (시설이용)

모든 어르신은 사무실에 고지한 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설 및 부대설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금연구역)

본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비흡현자의 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전체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제34조 (강제노역 금지)

모든 어르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등의 노역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위생)

모든 어르신은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 2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와 월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다.
2. 어르신은 상태에 따라 기저귀교체 등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케어 매뉴얼 (CARE-MANUAL)에 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어르신은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6조 (목욕)

모든 어르신은 목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1회 이상 정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목욕 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모든 어르신은 본원의 목욕실 및 부대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세탁)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인의 피복 및 침구류 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피복 및 침구류 등의 세탁은 물론이거니와 일광소독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8조 (의료)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월2회 이상 협력병원의 계약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병원방문은 보호자와의 동행이 원칙이다. 다만, 비용발생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39조 (물리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매일 실시되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재활치료 및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0조 (문화생활영위)

모든 어르신은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본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 이상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본인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원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본원에 고지 후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용발생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41조 (종교생활)

모든 어르신은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42조 (여가활동)

모든 어르신은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원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인이 여가선용을 위하여 본원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경우 본원에 고지 후에 보호자 동행으로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3.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원하시는 경우 활동 거실 및 산책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통신)

1. 모든 어르신은 자유로이 서신 왕래를 할 수 있다.
2. 모든 어르신은 본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직원의 도움으로 통화할 수 있다.
3. 모든 어르신은 원내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직원의 도움으로 통화할 수 있다.

제44조 (환경정비 등)

입소시설을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시설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이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2. 건물 내, 외부의 도색은 필요시마다 한다.
3. 거실의 도배장판은 청결을 유지하여 필요시 수시 정비하고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월동 대책을 수립, 동절기에는 난방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 만전을 기한다.

제45조 (소방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장은 집단 수용 시설에서 예측하는 화재 및 안전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보일러 시설 안전 점검 실시 (수시)
3. 승강기 시설 안전 점검 실시
4. 차량 정비 점검 등 각종 시설물 및 물품관리 철저
5.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연락체계, 자체 소방팀 설치 운영등

제46조 (개인정보보호)

모든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적법한 사항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7조 (사생활보장)

모든 어르신은 개인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48조 (권리의 규제)

1.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본 요양원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3]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본인이 치매, 정신지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경우
   5] 사회의 도덕,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경우
   6]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본 요양원의 합법적인, 정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어르신이 관여할 수 없다

제49조 (우선순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1.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2. 법인의 정관과 본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제50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거주 어르신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거주 어르신은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거주 어르시는 요양원내의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거주 어르신의 요양원 생활과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거주 어르신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요양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거주 어르신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1조 (거주 어르신 사생활 보호 및 존엄성 존중)

거주 어르신의 사생할 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52조 (거주 어르신 모임)

1. 요양원 내 거주 어르신은 친목, 취미활동, 자기 개발, 호스피스 활동과 관련하여 요양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모임을 만들 수 있다.
2. 시설장은 거주 어르신으로 구성된 모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후 , 모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3. 거주 어르신으로 구성된 모임은 요양원과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모임이 요양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유해 행위를 할 경우 시설장은 모든 편의와 지원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3조 (간담회)

요양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가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4조 (거주 어르신의 사고 및 질병)

1. 요양원은 거주 어르신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거주 어르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거주 어르신의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측은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거주 어르신이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때 통보토록 한다.
5. 거주 어르신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거주 어르신 보호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거주 어르신을 퇴소 조치할수 있다.
7. 요양원 측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요양원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거주 어르신 및 보호자는 요양원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55조 (거주 어르신의 실종 및 행방불명)

1. 거주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경우, 요양원은 필요한 신병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요양원은 실종 경위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노력으로 가장 빠른시간내에

실종자를 찾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한다.

3. 요양원은 실종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4. 실종자가 발생하면 요양원은 4시간이내에 보호자에게 경위와 상황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실종자 발생후, 신병확보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실패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6. 요양원은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아야하며, 상황에 따라 징계해야한다.

제56조 (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

1. 거주 어르신의 외출, 외박은 원칙적으로 주보호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 거주 어르신은 30분 이상의 외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출기록부 작성 및 시설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후 외출하여야 한다.
3. 거주 어르신의 외출은 당일로 한다.
4. 거주어르신이 외출 및 외박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요양원에 통보해야한다.
5. 거주 어르신이 외출 및 외박시간을 초과하고도 통보치 않을 경우는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6. 요양원직원이 동행하는 거주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은 직원의 출장보고로 가름할 수 있다.
7. 보호자가 동행하는 거주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은 보호자가 외출,외박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8. 시설장은 거주어르신의 원내 적응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외출과 외박을 불허할수 있다.

제57조 (거주어르신의 무단외출 및 이탈)

1. 거주어르신의 무단외출, 이탈로 인한 모든 사고와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직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하는 거주 어르신은 그 행위가 중할 경우 퇴소를 조치할수 있다.

제58조 (퇴소)

모든 어르신은 퇴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권리를 제공 받을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내에서 퇴소 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퇴소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수 있다.

제59조 (전원)

모든 어르신은 전원과 관련하여 다음각호와 같은 권리를 제공 받을수 있다.

1. 본인이 전원을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원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전원을 가용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수 있다.

제8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비용에 관한사항

제6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입소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경우
   3)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시설에서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 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재제,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재제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6. 입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어르신의 생명과 보호를 위하여 신체재제 지침에 의한다. 단, 제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자 동의를 구하고 반드시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하며 억제대 사용은 최대 2시간이며, 2시간마다 10분휴식을 하여야 하며, 해제하였다가 필요시 다시 억제하여야 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 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메트)를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2회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계약의사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시설은 감염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르신의 생명과 보호를 위하여 신체제재 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7.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9. 임종이나 감염병 격리를 위한 특별침실 사용 시 추가 비용은 받지 않는다

제9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61조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시설은 협약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협약체결
   - 시설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방문 횟수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이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3.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 의사는 시설 입소자의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 입소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진찰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간호(조무)사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 시설의 장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간호(조무)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 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알림장치를 침실·화장실·목욕실에 각 1개 이상 설치하며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입소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며, 입소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62조 (계약의사 지정)

1. 시설의 장은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2.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 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계약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3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64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1.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한다.
2. 계약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의료서비스별 처리 절차

1) 요양원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는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간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가.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한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라.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7)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병원입원 등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한다.

제10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사항

제65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1) 입소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교육 및 지도
   1)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수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배치하여 화재의 초동진화를 할수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1)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시설 내 담당자 및 시설관리자 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2)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설치하여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수 있도록 조치하며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6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67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 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함